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지원에 관한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3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·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검진비 청구 및 지급(안 제7조)
- 마. 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 및 기능(안 제8조, 제9조)
- 바. 환수조치 등(안 제1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의약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: 02-3396-6383, FAX: 02-3396-8907, 메일: foriv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(이하 "정신건강검진"이라 한다.)"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"검진기관"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2. "정신건강검진비(이하 "검진비"라 말한다.)"란 "정신건강검진"을 위해 정신건강검진·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.
3. "정신건강검진기관(이하 "검진기관"이라 한다.)"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은 "정신건강검진"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
2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

**제4조(검진기관의 선정)**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“정신건강검진”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,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지원내용)**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 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** ① “정신건강검진”을 실시한 “검진기관”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“검진기관”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“검진비”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“검진비”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**제8조(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)** ①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2. 정신보건전문요원
3.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
4.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5. 그 밖에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소의 “정신건강검진”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**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2.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
3. “검진기관” 지원 및 모니터링,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
4. 그 밖에 구청장이 “정신건강검진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**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환수조치 등)**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『지방세기본법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